

한국수출입은행 이사회규정

제 정 : 1977.12.30
1차개정 : 1980. 5.30
2차개정 : 1981.12.29
3차개정 : 1987. 7.10
4차개정 : 1998. 8.19
5차개정 : 1999. 5.21
6차개정 : 2003.11.26
7차개정 : 2006. 8.28
8차개정 : 2009. 7.16
9차개정 : 2010. 7.20
10차개정 : 2013. 3.25
11차개정 : 2014. 4.10
12차개정 : 2014. 7.29
13차개정 : 2015. 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가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은행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이하 “의장”이라 한다).
-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따라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없다.

제4조(회의)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3항에 따른 의장권한 대행자가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업무방법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과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5. 결산, 이익금 및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6. 자본금 및 적립금에 관한 사항
 7.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임대차, 처분 및 운용에 관한 사항(건당금액 100
억원 초과)
 8. 대리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사항
 9.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10.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법령, 기타 타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사항
 12. 별표에서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단,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및 관련 내규의 개폐에
수반된 변경의 경우는 제외
 13.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제1항 이외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보고사항)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정부, 운영위원회, 기타 관계당국에 의하여
변경 또는 부결된 사항
2. 법령, 기타 타 규정에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사항
3. 업무계획 추진실적 및 반기 결산내역 등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의결방법)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의 출석)

이사회 의장은 안전 제출부서장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배포)

이사회 안전 제출부서장은 부의권자의 결재를 받은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의사담당부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각 임원에게 배포한다.

제10조(의사록)

- ① 의사담당부서장은 의사록의 작성 등 이사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개회, 폐회의 일시
 - 2. 출석 또는 결석한 임원의 성명
 - 3. 회의사항 및 의결사항
 - 4. 발언요지
 -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의 의사록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출석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④ 의사담당부서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원본을 기록물관리담당부서로 이관하고 사본은 안전 제출부서장이 당초 안전에 첨부, 보관토록 한다. 다만, 제2항 제4호 발언요지는 안전 제출부서장이 발언내용을 발언순서대로 기록하여 의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부 칙 (제정) ~ 부 칙 (12)

(기 재 생 략)

부 칙 (13)

이 규정은 2015. 6. 11. 부터 시행한다.

【별 표】

이사회 부의대상 규정

- 운영위원회규정, 이사회규정, 경영위원회규정, 회계규정, 감사규정, 내부통제규정
- 직제규정, 취업규칙
- 리스크관리규정, 자산건전성분류및충당금적립규정, 여신규정, 여신정리규정, 부실여신에 대한 부책규정
- 임원연봉규정, 임원퇴직금규정,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보수규정, 복지규정, 국외보수복지규정, 퇴직금규정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